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 목 학교 운동부 감독(코치)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및 교육 요청

1. 민원조사담당관-5910(2016.9.21.)의 관련입니다.

2. 각 기관에서는 소속 학교 운동부 감독(코치)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여 주시고, 관련 법령의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달교육은 물론 관련 자료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학교 운동부 감독(코치)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, 스포츠강사는 대상 아님

3. 아울러, 학교 운동부 감독(코치)에 적용되는 「청탁금지법」은 학교 교직원 대상 내용(매뉴얼)과 동일하오니, 우리 부에서 기 안내해 드린 법 주요내용, 동영상, 질의응답사례 등의 교육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교육부장관

수신자: 시도교육청, 고등교육기관전체

주무관 신소연

행정사무관 이홍복

전결 10/11

민원조사담당관 이병석

협조자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7272 (2016-10-11)

접수 인재개발팀-00179 (2016-10-12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(어진동)

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074 전승 044-203-6093

/ sinso1209@moe.go.kr

/ 공개

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